

울산지방법원 2022. 10. 11 선고 2022가단430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